

'9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(안)

의안 번호	2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4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을 별첨과 같이 승인한다를 구함.

2. 제안사유

-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
- '93년도 국도비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반납
- 청소년 수련관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함.

3. 참고사항

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항별설명서 : 별첨

예 산 종 목 칩

제 1 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입시차입 할수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세출 예산총액	입시 차입 한도액	비 고
합 계	66,500,621	1,989,000	
일 반 회 계	49,596,397	1,487,000	
특 별 회 계	16,904,224	502,000	
소 계	10,971,207	328,000	
공 기 업	4,528,000	135,000	
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6,443,207	193,000	
소 계	5,933,017	174,000	
기 타	1,057,948	31,000	
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3,563,192	106,000	
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	669,364	20,000	
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	118,474	3,000	
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	129,974	3,000	
회 계	394,065	11,000	

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" 세입 · 세출 예산 " 과 같다.

제 6 조 19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조서" 와 같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6,252천원으로 한다.

1. 예산총칙

제1조 (총칙) 1994년도 속초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제2조 (업무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(상수도사업)

가. 급수호수	18,645	호
나. 연간 총 배수량	12,775	천㎥
다. 1일 평균 배수량	35	’
라. 주요 건설 개량 사업 : 뱀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132백만원		

제3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	수	입	
제1관 상수도사업수익	3,287,800		천원
제1항 영업수익	2,688,625		’
제2항 영업외수익	599,175		’
제3항 특별이익	-		’

지출

제1관 상수도 사업비용	2,912,975	천원
제1항 영업비용	2,110,189	·
제2항 영업외비용	694,786	·
제3항 특별손실	1,000	·
제4항 예비비	107,000	·

제4조 (지본적수입 및 지출) 지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지본적수입에이 지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,254,825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
 유보자금 374,825 천원 이월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처분액 880,000 천원및 적립금
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수입

제1관 자본적 수입	360,200	천원
제1항 고정자산 매각수입	-	·
제2항 고정부채수입	-	·
제3항 잉여금수입	360,200	·
제4항 기타 자본적 수입	-	·

지 출

제1관 자본적 지출		1,615,025	천원
제1항	가동설비자산	566,468	,
제2항	비가동설비자산	-	,
제3항	이연자산	-	,
제4항	무형고정자산	-	,
제5항	투자 및 기타자산	-	,
제6항	고정부채상환	968,557	,
제7항	기타 자본적 지출	-	,
제8항	예비비	80,000	,

제5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종의과 연합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(그 세부내역은 별첨 '계속비조서'와 같다.)

관	항	사업명	총액	년도	연 할액
자본적 지출	가동설비자산	상수도시설 확장공사	13,762 백만	1994 년도	2,500 백만
				1995 년도	7,000 백만
				1996 년도	3,000 백만
				1997 년도	1,262 백만

제6조 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(그세부 내역은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 와 같다.)

시	항	기	간	한	도	액
해	당	없	음	년도에서 년도에서		천원

제7조 (지방채)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기	채	목	적	한	도	액	기	채	방	법	이	자	율	상	환	방	법
				천원			해	당	없	음			%				

※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 기재

제8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- 천원으로 정한다.

제9조 (예산전용금지과목) 다음에 개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다른 과목의 경비에 전용할 수 없다.

(1) 기 본 금	476, 122	천원
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	1, 320	천원
(3) 특수활동비(')	12, 060	천원

제10조 (티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빚은물 공급을 위하여 티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00, 000 천원이다.

제11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월이익잉여금 천원과 당년도 예정이익잉금 천원
총 천원 중 천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(1) 이월결손보전금	-	천원
(2) 이익지립금	-	천원
(3) 감채지립금	-	천원
(4) 건설개량지립금	-	천원
(5) 남부금	-	'

제12조 (재고자산 구입한도액)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은 천원으로한다. (그 세부내역은 별첨 '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' 와 같다.)

제13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 (그 세부
내역은 별첨 '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' 외 같다.)

구	분	종	류	명	칭	수	량	금	액
1. 취득 자산				별					
2. 처분 자산				취				원	

제14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위원으로 정한다.

1994 년 4 월 일

속 초 시 장